

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제명 띄어쓰기 및 상위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1조 인용조문 수정
 -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근거(장애인복지법 제59조) 인용조문 수정
- 조례안 제8조제6항 수정
 - 법률의 근거없이 조례로서 재산권을 제한(기부채납)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되어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”를 “평창군 장애인 보호
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38조”를 “제59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송정리 2390-10번지”를 “송정길 12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
법」에 의한 수급자”로 한다.

제8조제6항 중 “얻어야 하며, 준공과 동시 평창군에 기부채납 하여야”를
“얻어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하여야 한다.

㉦ (생 략)

-----.

㉦ (현행과 같음)

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2. 미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 성 자	주민생활지원과장 남 동 선
연 락 처	(033)330-2150

관계 법령

□ 장애인복지법

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~ ⑤ 생략